

춘천지방법원 2022. 9. 29 선고 2021나31860(본소), 2021나31877(반소) 판결 [토지 매매대금
잔액 · 토지매매대금 잔액 지급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

담당변호사 최유덕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2. 7. 14.

판 결 선 고 2022. 9. 29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3. 25. 선고 2020가소3775(본소),
2020가소463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본소

가. 청구취지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1,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항소취지 :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반소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2,000만 원을 지급하라(피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여현주, 판사 신흥호, 판사 장두봉